

Chubb 층간소음피해보장보험 상품요약서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 ① 이 보험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피보험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②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 사고발생의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에 의해 보험가입 금액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 상품의 특이사항

- ①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소음측정결과 층간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② 이 상품의 보험기간(보험회사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으며,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구 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	층간소음피해 보장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동주택인 보험목적에서 “층간소음 ^{주1)} ”이 발생하여 소음측정결과 ^{주2)} 가 층간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주1) 층간소음

: 공동주택내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 기준으로 아래층, 위층,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를 따릅니다.

주2) 소음측정결과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3조(층간소음 관리 등)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음·측정대행업체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를 말합니다.

※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2)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① (기본계약)충간소음피해보장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제3자와의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또는 측정대행업체에서 소음측정을 하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전쟁(선전포고의 유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상태
-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3. 보험료 산출기초 및 보험료 예시

(1)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2) 보험료 산출 예시

(일시납 기준)

담보명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료
기본계약	충간소음피해보장	50만원	1년	310원
			3년	790원

4.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2) 미경과보험료 산출기준

- ①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 기경과기간의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기납입보험료에서 뺀 잔액
- ② 그 밖의 해지: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된 보험료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hubb. Insured.SM